

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|
| 발의연월일 | 2025. . . |
| 발 의 자 | 김영태 의원 |

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영태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: 2025. . .

발 의 자: 김영태 의원(1인)

찬 성 자: 강승수 · 김영길 · 김정도 · 김재우
박세채 · 이명희 · 이정희 · 추은희
허민근 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·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책무(안 제3조)

나. 시범사업의 실시 등(안 제5조의2)

다. 주차시설 설치(안 제7조)

라. 무단방치 금지 등(안 제8조)

마.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및 보관료(별표 1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- 1)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, 제36조
- 2)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15조

나. 부서검토: 교통정책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시장의 책무)”를“(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,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시범사업의 실시 등)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,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사고 발생률, 이용자 만족도, 교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 중 “공원, 하천, 자전거도로, 시내버스 정류장 등”을 “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”로, “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”을 “주차시설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「도로법」 제74조”를 “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 및 제36조”로, “이동·보관”을 “이동·보관·매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견인·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소요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및 보관료(제8조제3항 관련)

| 구 분 | 견인료 | 보관료 |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개인형 이동장치 | 30,000원 | 30분당 | 400원 |
| | | 1일(최대) | 5,000원 |
| | | 1회(최대) | 200,000원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3조(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,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의2(시범사업의 실시 등) ①</p> <p>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,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④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 사고 발생률, 이용자 만족도, 교</p> |

제7조(주차시설 설치) 시장은 공원, 하천, 자전거도로,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8조(무단방치 금지 등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「도로법」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·보관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주차시설 설치) -----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-
----- 주차시설-----
--.

제8조(무단방치 금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 및 제36조----- 이동·보관·매각-----
-----.

③ 시장은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견인·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, 소요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도로교통법」

제35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·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1. 경찰공무원

2. 시장 등(도지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(이하 “시·군공무원”이라 한다)

②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.

③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

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·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.

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·보관·공고·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.

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·보관·공고·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탁법」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.

제36조(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) ①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

·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차의 견인·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□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

제15조(소요비용의 징수 등) ① 경찰서장,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·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(이하 “소요비용”이라 한다)을 징수하고,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경찰서장,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금액,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그 차

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교통정책과

조 례 명

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검토 사항

- 근거 법령
 - 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, 제36조
 -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15조
 - 「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」

□ 주요 사항

- 주차시설 설치(안 제7조)
- 무단방치 금지 등(안 제8조)
-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및 보관료(안 별표 1)

□ 검토 결과

- 시민의 통행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 조례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(PM) 견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
- 다만, 관련 상위법령이 국회 계류중에 있어, 상위법령 제정시 차후 조례 개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

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- 기대효과 : 무질서하게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 감소, 도시미관 개선 및 교통질서 확립
- 소요예산 : 403백만원(1차년도) * 비용추계서 첨부
- 문 제 점 : 해당사항 없음

[별지 제1호서식]

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7조 및 제8조 : 주차시설 설치와 견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수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비용추계기간 : 2026년 ~ 2030년(5년)
- 「불법주차 PM 견인」 연도별 운영 예산
 - 초기구축비(265,000천원) : 신고시스템, 견인차량, 보관장소, 주차구역 설정 등
 - 인건비(122,848천원) : 임기제 외 3명 인건비
 - 운영비(15,750천원) : 서버유지보수비 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\ 연도 | | 연도 | | | | | 합계 |
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|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|
| 세출 | 초기구축비 | 265 | - | - | - | - | 265 |
| | 인건비 | 122 | 124 | 126 | 128 | 130 | 630 |
| | 운영비 | 16 | 16 | 16 | 16 | 16 | 80 |
| | 소계 | 403 | 140 | 142 | 144 | 146 | 975 |
| 총 비용 | | 403 | 140 | 142 | 144 | 146 | 975 |

※ 인건비 상승분(연도별 소요예산의 1.5%) 반영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| 구분 \ 연도 | 1차년도 | 2차년도 | 3차년도 | 4차년도 | 5차년도 | 합계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국 비 | | | | | | |
| 도 비 | | | | | | |
| 시 비 | 403 | 140 | 142 | 144 | 146 | 975 |
| 민 간 | | | | | | |
| 기 타 | | | | | | |
| 합 계 | | | | | | |

5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차후 사업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

6. 작성자

-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홍정민(☎480-6255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초기구축비 : 265,000천원

- 예산편성 : 교통정책과
- 산출기초
 - ◆ 신고시스템 구축 65,000천원 × 1식 = 65,000천원
 - ◆ 견인차량 구입(특수제작) 50,000천원 × 2대 = 100,000천원
 - ◆ 보관장소(컨테이너) 구입 25,000천원 × 2대 = 50,000천원
 - ◆ 주차구역 설정 1,000천원 × 50개소 = 50,000천원

2. 인건비 : 122,848천원

- 예산편성 : 교통정책과
- 산출기초
 - ◆ 기본급 : 82,560원 × 4명 × 247일 = 81,569천원
 - ◆ 주휴 및 연차수당 : 82,560원 × 4명 × 63일 = 20,805천원
 - ◆ 보험료 : 20,474천원

3. 운영비 : 15,750천원

- 예산편성 : 교통정책과
- 산출기초
 - ◆ 서버유지보수비(개발비의 15%) 812천원 × 12개월 = 9,750천원
 - ◆ 일반운영비(유류비 등) 500천원 × 12개월 = 6,000천원